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안내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22년 귀속분)

- 1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2 하반기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2페이지 참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3 또한,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1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2 하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23.3.15.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23.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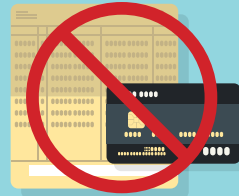


신청요건 동영상



신청방법 동영상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신청요건 및 방법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26

검색창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www.hometax.go.kr

2023년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안내]



근로장려금(ETC) · 자녀장려금(CTC)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①~④)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 ¹⁾ 와 부양자녀 ²⁾ , 70세 이상 직계존속 ³⁾ 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⁴⁾ 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4)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요건(부부합산)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 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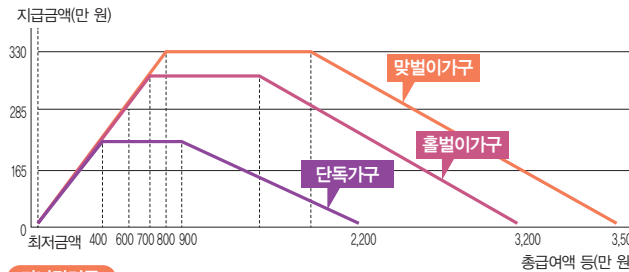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2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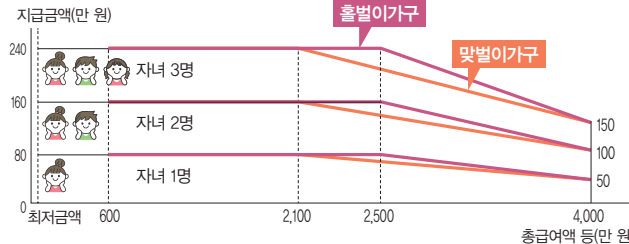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해당없음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4,000만 원	자녀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미만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2023년도)

'22년 귀속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22년 귀속 정기분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3년 귀속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